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인명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(안 별표 1 및 별표 2)
 -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을 포함한 한자 137자를 현재 8,142자에 추가하여 총 8,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.

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871